

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)의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

1. 관련

- ① 법무부 체류관리과 「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」
- ②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「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」

2.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)의 시간제 취업 기본원칙에 따른 제한 사항

- ①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
- ②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'체류자격 외 활동' 신고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나,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
- ③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,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한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나, 소속대학 이외 기관에 과제 참여 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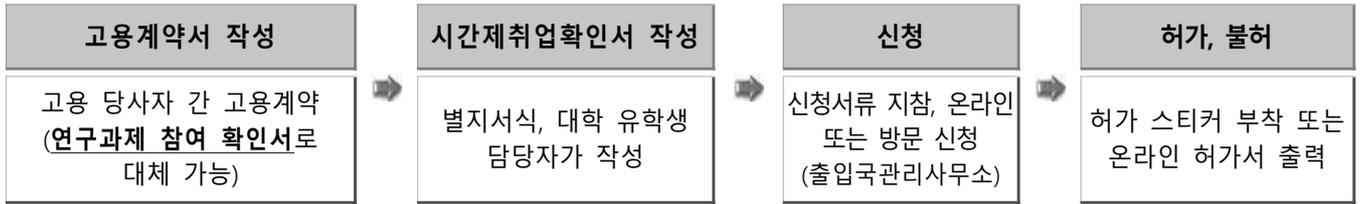
[비자 종류별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]

비자종류	연구과제 수행기관	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
D-2 (유학)	소속대학	학점취득과 관련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 ※ 단, 학점취득과 관련 없는 과제 참여의 경우 "시간제 취업허가" 필요 ※ 연구과제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,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
	외부기관	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"시간제 취업허가"를 받은 경우만 참여 가능
E-3 (연구)	본교	허용
	외부	출입국관리사무소에 '근무처 추가' 신고 후 참여 가능
F-4 (재외동포)	본교, 외부	허용

3. 위반자 처리기준(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)

- ① (1차 적발 시) 불법취업 당사자(유학생)와 기관,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 부과
- ② (2차 적발 시) 강제추방(건설업 분야의 경우 횡수 관계없이 적발 시 출국)

4.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



5. 제출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(별지34호_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), 수수료
- 시간제 취업 확인서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, 성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(수행대학 또는 근무처) 사본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 기재) ▶ 연구과제 참여확약서로 대체
-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(토픽 자격증 / 해당자에 한함)

6. 문의처 : 산학협력단 응용연구지원팀 이윤심(T.250-8292)

붙임 :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1부

♣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소지자)의 연구과제 참여 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